

#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순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82
----------	------

발의년월일 : 2015. 11. 20.  
발 의 자 : 홍순복 의원 등 명

### 1. 제정이유

-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등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주요내용

-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시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13조)
-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5.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6.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7.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의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 및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무궁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2장 나라꽃 육성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식재·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산시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2. 무궁화 공원 조성

### 3.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장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 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무궁화 육성사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및 시의원

2.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의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종합계획

2.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

3.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전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⑥ 심의안전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을 재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전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보조

제14조(지원)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무궁화 식재·관리 사업
2.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사업
3. 무궁화 관련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그 밖에 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회의 참석수당 : 1,600천원(80,000원 × 10명 × 2회)
-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용역비 : 20,000천원
- 지원비 : 10,000천원 이상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소요 예상 예산액 : 31,600천원

소요 예산액(예상)	회의 참석수당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용역비	지원비	비고
31,600천원	1,600천원	20,000천원	10,000천원	

### 4. 작성자 :